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7. 최형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2.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형두의원)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로써 사고 발생 시 금전손실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타인’에서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명확하게 하고,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 공사업자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인 경우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까지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우선,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일정 부분 강제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은 근본적으로 공사업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럼에도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업자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공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앞서 언급한 타 입법례 또한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에만 보험·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